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
고서**

1993. 8. 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7月 14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7月 24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第2次 行政財務委員會(1993年 8月 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가.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2조)
 - 법관·교육자 등 덕망있는 자 3인, 구의원 1인, 소속공무원 1인
- 나.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 마. 위원회 간사임명·위원회 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제8호)
- 바.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을 준용함(안 제10조)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93. 8. 2 영등포구청장이 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93. 6. 11 법률

제4566호로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제21조(위임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린 동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93. 8. 12.~9. 11.까지이며 늦어도 '93. 8. 11.까지는 동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 안	187
번호	

제출년월일: 1993. 7. 24.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2조)
 - 법관·교육자 등 덕망있는 자 3인, 구의원 1인, 소속공무원 1인
-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간사임명·위원회경비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제8호)
-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을 준용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 4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8. 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7月 28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8月 2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第2次 行政財務委員會(1993年 8月 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발급토록 함에 따라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일부 명칭 변경이 있어 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이 현저할 때 납세의무자 신

청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음을 증명하는 징수유예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제2항) 등으로 변경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가. '93. 8. 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증명은 세목별로 증명을 발급토록 되어 있어
 - (1) 현행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 (2) 현행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은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등으로
 - (3) 현행 재산세 과세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지방세 관련증명의 명칭을 일부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수수료 금액 건당 350원은 변경이 없이 동 민원사무처리규정 처리기준표와 일치시키는데 불과하므로 동 개정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 안	188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7.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발급토록 함에 따라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일부 명칭 변경이 있어 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함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